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6444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1. 3. 18.

판 결 선 고 2021. 4. 15.

주 문

1. 피고가 2020. 3. 31. 원고에게 한 취득세 91,828,600원과 농어촌특별세 7,723,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5. 4. 3.** [redacted]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그 위에 있는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나. 이 사건 현장조사

피고는 **2019. 6. 13.**부터 2019. 6. 20.까지 [redacted]시에 있는 유흥주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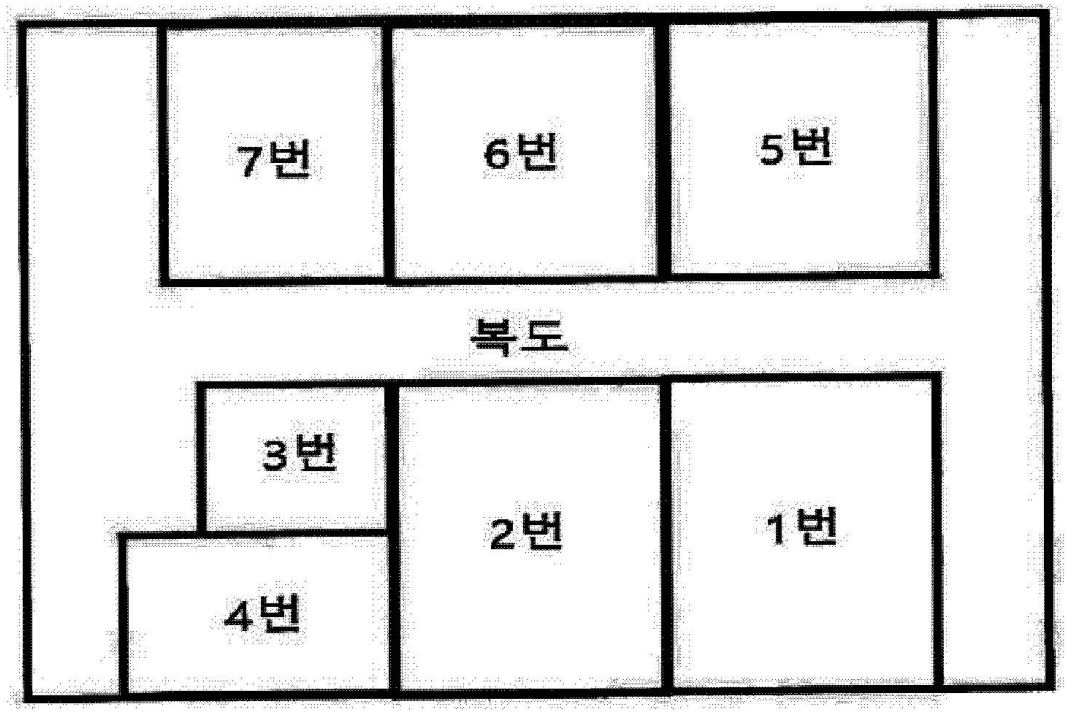
▸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중 건축물대장상 위락시설(유흥주점)(면적 : 104.61㎡)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면적 : 38.7㎡, 이하 '이 사건 쟁점 장소'라 하고, 위 위락시설과 이 사건 쟁점 장소를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이 사건 점포'라 한다)로 되어 있는 각 점포가 건축물대장과는 달리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는 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피고가 밝혀낸 이 사건 점포의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객실 수	객실 면적 합계	전용면적	총면적 (공용면적 포함)
6개	74.82㎡	143.31㎡(= 104.61㎡ + 38.7㎡)	148.68㎡

▸ 이 사건 점포의 도면은 아래 그림과 같다(5, 6, 7번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이 사건 쟁점 장소이고, 4번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객실이 아닌 내실로 사용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다.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및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20.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위 조항에 규정된 세율 8%를 적용해 계산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2) 피고는 **2020.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 규정된 세율 8%를 적용해 계산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에 적힌 것과 같다.

과세표준(원)	세목(세율)	본세(원)	가산세(원)		합계(원)
			무신고(20%)	납부불성실	
912,285,207	취득세(8%)	72,981,210	14,596,240	4,251,150	91,828,6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농어촌특별세(10%)	7,298,120		425,110	7,723,230
합계					**99,551,8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 사건 점포를 C에게 임대했다.

2) 그런데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쟁점 장소를 객실로 무단 개조해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했다.

3) 그러나 원고는 C이 이 사건 쟁점 장소를 객실로 무단 개조해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이를 용인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쟁점 장소가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되어 생긴 경제적 이익을 누리지도 않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법리

1)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과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르면, '유흥접객원을 두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10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이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영업장소와 그 토지'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해당한다.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은 위와 같은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만이 아니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그 과세물건이 '고급오락장이 되었을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여기서 말하는 과세물건이 '고급오락장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과세물건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만이 아니라 그 취득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과세물건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참조).

▸ 다만, 과세물건을 임차한 사람이 과세물건 소유자의 뜻과 관계없이 과세물건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후 과세물건 소유자가 고급오락장 설치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그 설치를 용인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규정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2)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취득세를 중과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C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였던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 2011. 2. 9. 이 사건 점포의 용도가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으로 바뀌었고, C은 그때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2) 피고는 2011년과 2012년에 이 사건 점포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분리과세를 통해 D에게 재산세를 중과했다.

▸ 이에 2012. 9. 13. 이 사건 점포의 용도가 위락시설(유흥주점)(면적 : 104.61㎡)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이 사건 쟁점 장소)로 바뀌었고, 그 무렵 C은 이 사건 쟁점 장소를 폐쇄한 뒤 피고 소속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으며, 피고는 그 뒤로 분리과세를 통해 D에게 재산세를 중과하지 않았다.

3) C은 2015. 5. 15.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870,000원에 임차했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차임은 2019. 4. 1. 월 2,100,000원으로 인상됐다.

4) 2019. 6.경 실시된 이 사건 현장조사 과정에서 C이 이 사건 쟁점 장소를 포함한 이 사건 점포 전부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5) 피고는 이 사건 현장조사 후인 2019. 9. 6. 원고에게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면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이 사건 점포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포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과세물건들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했다.

▸ 그런데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19. 9. 30. 위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6) 제1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점포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와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사건 처분을 했다. 그 무렵 원고의 직원과 C은 이 사건 점포 때문에 원고에게 취득세가 중과되는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

7)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뒤인 2020. 4. 1., 같은 달 6., 같은 달 10. 세 차례에 걸쳐서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 o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점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함
> - 그런데 C은 무단으로 이 사건 쟁점 장소를 객실로 개조해 유흥주점으로 사용했음
> o 이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장소가 객실로 개조되지 않았더라면 납부하지 않았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손해를 보게 되었음
> - 따라서 C은 이 사건 쟁점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기계 및 조명, 쇼파, 탁자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쟁점 장소를 원상복구하며, 위와 같은 무단 개조 때문에 원고에게 생긴 손해(이 사건 쟁점 장소가 객실로 개조되지 않았더라면 납부하지 않았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배상하기 바람
> o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 C은 2020. 4. 14.와 2020. 4. 20.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장소가 객실로 개조되지 않았더라면 납부하지 않았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액 합계인 16,867,715원'을 입금했다.

8) 원고는 2020. 4. 23.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 o C이 무단으로 이 사건 쟁점 장소를 객실로 개조해 유흥주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원고가 손해를 보았음
> - 따라서 C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주기 바람
> · 이 사건 쟁점 장소를 원상복구한 뒤 원고의 확인을 받을 것
> · 이 사건 처분 때문에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99,551,8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원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예치할 것

▶ C은 위 내용증명우편에 따른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o 이 사건 쟁점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기계 및 조명, 쇼파, 탁자 등을 철거(갑 제24호증, 증인 C의 증언)
o 원고에게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 99,551,830원(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20. 5. 14.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 130,000,000원(위 금액의 약 130%), 채무자 : C, 근저당권자 : 원고]를 마침(갑 제25호증)
o 2020. 6. 4.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각종 비용 합계 7,3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갑 제26, 27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1, 12, 18, 19, 20, 22, 24, 26, 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C이 원고의 뜻과 관계없이 이 사건 점포 일부인 이 사건 쟁점 장소를 객실로 개조해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이 되었지만,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C이 이 사건 쟁점 장소를 객실로 개조해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추인하거나, 그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추인하거나 용인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점포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규정된 중과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점포는 용도가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으로 바뀐 2011. 2. 9. 무렵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되었지만, 2012. 9. 13. 이 사건 점포의 용도가 위락시설(유흥주점)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로 바뀌고 그 무렵 C이 이 사건 쟁점 장소를 폐쇄함으로써 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 사건 점포를 C에게 임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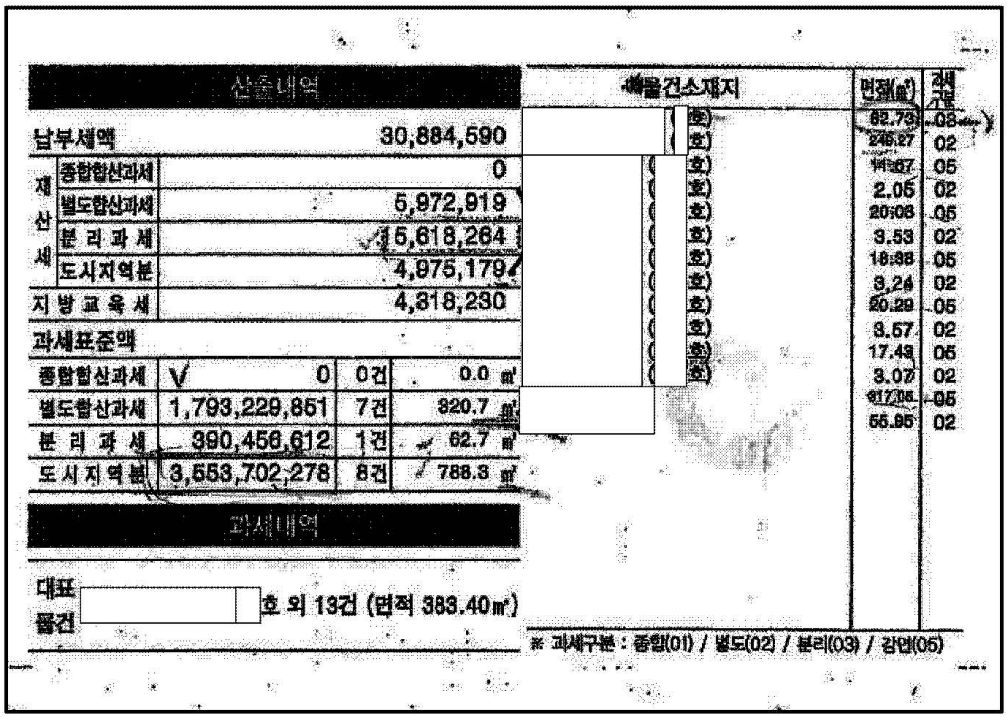
2) 그 후에 C이 언제 이 사건 쟁점 장소를 객실로 개조해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했는지가 기록상 명확하지 않다. 다만,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뒤 이 사건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 어느 시점부터 이 사건 쟁점 장소를 객실로 개조해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확실한데, 원고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 오히려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 시점은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20. 3. 11.(이 사건 통보일)이고, 그 무렵 원고의 직원과 C이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쪽은 그 무렵까지 이 사건 쟁점 장소가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점포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포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과세물건들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계산한 지방세와 지방교육세를 원고에게 부과했고,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위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납부고지서에는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도시지역분 별로 과세표준액과 납부세액만이 적혀있을 뿐, '이 사건 점포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위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C이 이 사건 쟁점 장소를 객실로 개조해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추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출내역

납부세액		30,884,590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0		
	별도합산과세	5,972,919		
	분리과세	5,618,264		
	도시지역분	4,975,179		
지방교육세		4,318,230		
과세표준액				
종합합산과세	V 0	0건	0.0 ㎡	
별도합산과세	1,793,229,861	7건	320.7 ㎡	
분리과세	390,456,612	1건	62.7 ㎡	
도시지역분	3,553,702,278	8건	788.3 ㎡	

과세내역

대표물건 호 외 13건 (면적 383.40㎡)

건축물 건소재지

면적(㎡)	과세구분
82.73	05
246.27	02
141.67	05
2.05	02
20.08	05
3.53	02
18.88	05
3.24	02
20.29	05
3.57	02
17.43	05
3.07	02
917.08	05
55.95	02

※ 과세구분 : 종합(01) / 별도(02) / 분리(03) / 감면(05)

4) 2019. 4.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이 월 1,870,000원에서 월 2,100,000원으로 인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차임 인상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뒤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보증금 인상도 수반하지 않았으며, 그 인상률도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차임 인상은 기간 경과에 따른 물가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이 인상된 차임을 이 사건 점포가 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이 됨에 따른 경제적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통보에 이은 이 사건 처분 직후부터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무단으로 이 사건 쟁점 장소를 객실로 개조해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데 따른 책임을 물었고, 실제로 C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거나 그 손해를 확실히 배상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C이 원고도 이 사건 쟁점 장소가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6)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쪽 관계자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 중인 유흥주점에 자주 방문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점포의 사용실태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단서 생략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0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